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된 영업비밀의 법적문제

- 비밀관리성 요건을 중심으로 -*

이홍기**

【목 차】

I. 메타버스의 특징과 영업비밀	
II. 영업비밀의 의의와 비밀관리성	
1. 영업비밀과 비밀관리성	
2. 비밀관리성 요건의 일반적 검토	
3. 소결	
III. 영업비밀의 의의와 비밀관리성	
1. 메타버스의 유형과 문제의 소재	
2. 메타버스 서비스 유형에 따른 비밀관리성 문제	
3. 메타버스의 개방정도에 따른 비밀관리성 문제	
4. 메타버스 플랫폼 관리자의 문제	
5. 기타의 문제	
IV. 맺음말	

【국 문 요 약】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메타버스가 일상적인 기업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되는 영업비밀의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글은 현실세계와 다른 성질을 갖는 메타버스에 대하여 종래 영업비밀 요건 중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을 어떻

* 이 글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제출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새롭게 작성한 것입니다. 최신의 주제에 대한 소중한 연구기회를 주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심한 심사의견으로 조언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원, 법학박사.

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검토하였다. 최소한 현실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메타버스가 구현되지 않는 한, 비밀관리성 요건의 적용은 이미 존재하는 법리를 개별 메타버스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환경이 더욱 도입됨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새로운 영업비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이 글은 대안으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보호지침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실무적 문제를 예방할 것을 제안하였다.

I. 메타버스의 특징과 영업비밀

널리 알려졌듯 메타버스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¹⁾²⁾ 그동안의 메타버스는 정보통신 기술의 한계로 인해 현실세계를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디지털전환시대의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구분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초기의 메타버스가 현실을 흉내낸 수준의 가상공간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생산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중이다. 특히 COVID-19으로 인한 비접촉,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현실상의 비즈니스 환경에 근접한 형태의 메타버스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³⁾ 최근 등

1) 용어로서의 ‘메타버스(metaverse)’는 1992년 닐 스티븐슨(Neil Stephenson)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2) 메타버스가 널리 논의되고, 또 실제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용례도 사용자에 따라 다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며, 이들의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3)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국내에서는 ‘직방’이 종래 강남역에 위치한 사옥을 동일하게 재현한 오피스 메타폴리스를 도입하여 비대면 원격 업무를 본격화했다. Nvidia는 메타버스 플랫폼 Omnivia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업무구성원이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로블록스에서도 이용자들이 직접 소규모 메타버스를 만들어 기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가상의 영업활동을 영위케 하는 콘텐츠, 또는 간단한 수준의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한 콘텐츠 등이 제공되고 있다.

장한 메타버스 비즈니스 플랫폼들은 종래 단방향의 체험형 가상현실 서비스들과는 다르게, 양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⁴⁾ 다만, 이러한 메타버스는 직접 영업상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므로,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되는 영업 정보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하지만 현실세계와는 다른 성질을 지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영업비밀관리에 대해 종래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요소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⁵⁾ 이 글은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된 영업비밀의 문제를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업무환경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더라도 당장 영업비밀 그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영업비밀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즉 어떻게 비밀로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는 새롭게 제기될 것이다. 다만 메타버스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기에 우선은 영업비밀과 비밀관리성의 일반적인 요건을 검토한 후, 최근 주로 논의되는 메타버스 유형에 대입하여 비밀관리성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영업비밀의 의의와 비밀관리성

1. 영업비밀과 비밀관리성

일반적 의미에서 영업비밀은 기업이 비밀로 보유하는 정보를 총칭한다.⁶⁾ 사전적으로는 “기업이 경쟁자나 소비자에 비하여 우월한 입장에서

4) Eccles, Robert G., Jr., and Jonathan Reichenal. "The Metaverse as a Business Platform." *Harvard Interactive Media Review* 1, no. 1 (spring 2007).

5) 노현숙,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영업비밀성에 관한 연구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2016, 473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관리성 여부인데, 비밀관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환경에서 적용되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6) 법제상 민법과 형법 등 ‘비밀’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에도 통일된 정의는 제시되지 않는다(윤선희 외, *영업비밀보호법*, 법문사, 2019, 79면). 이 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시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요소나 방법. 기업만이 보유한 공식, 관행, 프로세스, 디자인, 도구, 패턴, 정보의 집적 따위”로 정의된다.⁷⁾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경영상 유용한 정보를 별개로 취급하여 타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영업비밀의 획득 없이는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영업비밀이 경쟁자에게 공개된다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를 통한 영업비밀보호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가지만,⁸⁾ 근대적 형태로의 입법은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보통법상의 법리를 통해 형성되었다.⁹⁾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입법상 ① 비밀 또는 비공지적 정보일 것(비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경제적 유용성) 및 ③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의 요건 등이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¹⁰⁾

요건들 가운데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 보호요건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¹¹⁾¹²⁾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특정한 형태의 권리를 적극

되는 영업비밀 개념에 집중하였다.

- 7) 우리말샘 국어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25484&viewType=confirm (2021년 10월 4일 최종방문).
- 8) 다만 로마법상의 개념은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현대의 영업비밀보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해당 로마법의 개념이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기원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Watson, A. (1996). Trade Secrets and Roman Law: The Myth Exploded. Tul. Eur. & Civ. LF, 11, 19.
- 9) Bone, R. G. (1998). A new look at trade secret law: doctrine in search of justification. Calif. L. Rev., 86, 241. 252. (“Trade secret law as we know it today began to develop with the rise of industrial capitalism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 10) 로앤비 온라인주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비밀관리성], 2021;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요건에는 경제성 요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과 같이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일치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윤선희, 앞의 책, 80면).
- 11) 노현숙, 앞의 논문, 463면(“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비밀관리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김창화 외,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영업비밀 보호요건 판단의 변화 - 기여책임 원칙에 의한 ‘상당성’의 판단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4권 제2호, 2014, 151면(“대부분의 국가들은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비슷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해석상 가장 많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상당한 노력’부분이다.”).
- 12) 본질적으로 비밀관리성은 비밀성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요건으로 구분하지 않는 견해(박광민,

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부정한 접근을 규제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관리되어야만 법에 의해 보호된다. 비밀관리성의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른다.¹⁴⁾ 이를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대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비밀로 분리하여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이 알 수 있는 비밀성의 객관적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¹⁵⁾ 영업비밀의 형태는 다양하다. 영업비밀은 서류, 디스크, 필름 등 물적 매체에 저장될 수도 있고 사람의 기억 등에 저장될 수도 있으므로, 영업비밀 주체의 업종, 규모, 종업원 수, 정보의 성질과 중요성, 비밀침해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¹⁶⁾

윤해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념의 검토”, 성균관법학, 제18권 제1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418면; 현대호,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에 관한 법제연구”, 법조, 제587권(법조협회, 2005), 190면)가 있으나, 비밀성은 정보의 비밀로서의 속성에 관한 것이고 비밀관리성은 취급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를 구분하는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 13) 윤선희 외, 앞의 책, 87면(“영업비밀보호제도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특정 형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 유용한 정보를 부정하게 접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 14) 손승우,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2020, 50면(“비밀관리성 판단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 15)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 진원사, 2019, 291면(“영업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16) 특허청, 영업비밀보호가이드북, 2004, 18면-19면(“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는 물적인 매체(서류, 디스크, 필름 등)에 체화된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에 의한 것도 있으므로 영업비밀 주체의 업종, 규모, 종업원의 수, 정보의 성질과 중요성, 비밀침해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당해 정보가 비밀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단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한국특허법학회, 영업비밀보호법, 박영사, 2017, 51면; 노현숙, 앞의 논문, 462면 등.

2. 비밀관리성 요건의 일반적 검토

가. 현행법상 비밀관리성 요건

(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정

현행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이는 2019년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혁상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크게 3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2) 비밀관리성 요건의 발전

최초 입법 후 20여년 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할 것”이었으나, 2015년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 노력”의 요건으로 완화하였다. 개정의 취지로는 영업비밀 취급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호지원의 차원이 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상으로는 비밀관리로의 부담이 상당하고, 법원이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2019년 개정에 따라 합리성도 요구하지 않고 “비밀로서 관리”로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개정 전후에 따른 비밀관리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¹⁷⁾ 우리나라 법원은 비밀관리성을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해석한다.¹⁸⁾ 해당 법리는 “상

17) 손승우, 위의 책, 51면(“그러나 실무적으로 ”합리적 노력“과 ”단순한 비밀관리“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1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이에 관해 해당 법리가 비밀관리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밀관리의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로엔비온라인주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비밀관리성], 2021(“왜냐하면 이 법리는 ‘비밀이 관리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한 것일 뿐,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도 제시된다.

당한 노력” 요건이 제시되던 구법 하에 제시된 것이지만, 2015년 “합리적 노력”으로의 개정 후에도 그대로 통용되었다. 2019년 개정 후로 법원이 비밀관리성에 관해 명시적인 해석을 내어놓은 판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의 해석에 관해서는 현행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3) 비밀관리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법원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들인 노력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¹⁹⁾ 이는 기업과 영업비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나치게 비밀관리성 기준을 높게 적용한다면 영업비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지고, 영업에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정보를 오히려 취급하기 어렵게 되는 한계가 있다.²⁰⁾ 따라서 비밀관리성의 노력은 기업의 업종, 규모, 종업원의 수, 해당 영업비밀이 속한 기술분야 또는 성질, 침해방법의 수단과 방법, 영업비밀이 사용되는 업무의 특징, 침해자와 보유자 회사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²¹⁾

1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판결.

20) 정차호, “영업비밀 관리성 요건: 객관적 인식을 위한 상당한 노력”, 성균관법학 제26권 제1호, 2016,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302-314면.

21) 대전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7노3469 판결(“비밀관리성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의 수준은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고, 보유자의 능력에 걸맞는 '합리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은 당해 정보에 대한 보유자의 비밀 관리의사, 즉 '당해정보는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해당 정보의 내부에서의 사용에 지나친 제한을 야기하거나 보유자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당성의 수준은 보유자인 기업의 업종, 규모, 종업원의 수, 해당 영업비밀이 속한 기술분야 또는 성질, 침해방법의 수단과 방법, 영업비밀이 사용되는 업무의 특징, 침해자와 보유자 회사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주요국의 비밀관리성 요건 검토

(1) 미국

가) 영업비밀의 개념

미국법상 영업비밀은 판례법상 발전해왔으며,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 Act, 이하 “UTSA”라 한다)은 이를 “공식, 원형, 편집물, 프로그램, 도안, 방법, 기술 또는 공정을 포함하는 정보로서 (i) 그 개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건 잠재적이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과 (ii) 어떤 상황에서 그 비밀을 유지하기에 합리적 노력의 대상인 것”으로 정의한다.²²⁾ UTSA는 뉴욕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되었다.²³⁾ 한편 연방영업비밀방어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은 “정보의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해당 정보가 그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타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정보 등”으로 정의한다.²⁴⁾ 따라서 미국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i) 실제적 또

22) UTSA Sec 1. (4).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i)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 by,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ii)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23) UTSA의 도입현황에 관해서는 미국 통합법제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의 웹페이지(<https://www.uniformlaws.org/committees/community-home?CommunityKey=3a2538fb-e030-4e2d-a9e2-90373dc05792> 2021년 12월 15일 최종방문) 참조. 뉴욕주는 영업비밀에 관한 별도의 주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을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영업비밀보호법과 상당히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갖는다. Sharon K. Sandeen and Christopher B. Seaman, Toward a Federal Jurisprudence of Trade Secret Law 32 Berkeley Tech. L.J. 829 833 footnote 5. (2017) (“North Carolina has a statute that is very similar to the UTSA.”).

24) 18 U.S.C. §1839(3). (“the term “trade secret” means all forms and types of financial,

는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ii) 해당 정보에 대해 편익이 있는 타인들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iii)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이어야 한다(비밀관리성).²⁵⁾

나) 비밀관리성 요건의 검토

UTSA는 영업비밀의 관리를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며,²⁶⁾ 연방 영업비밀방어법은 비밀관리성 요건에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²⁷⁾ 두 법을 비교할 때 합리적 노력은 공통되는 요건이겠으나, ‘해당 상황’이라는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합리적 노력의 기준은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실제적 노력의 여부로 판단된다. 그 노력의 정도는 영업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상대방이 부정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게 만드는 정도에 충분할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²⁸⁾ 다만 합리적 노력은 가능한 모든 노

business, scientific, technical, economic, or engineering information, including patterns, plans, compilations, program devices, formulas, designs, prototypes, methods, techniques, processes, procedures, programs, or code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and whether or how stored, compiled, or memorialized physically, electronically, graphically, photographically, or in writing if— (A)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and (B)the information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through proper means by, another person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the disclosure or use of the information.”).

- 25) 이규호, 앞의 논문, 14면(“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i) 실제적이든지 잠재적이든지간에 독자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ii) 해당 정보로부터 편익을 얻었을 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iii)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 26) UTSA Sec 1. (4)(ii).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 27) 8 U.S.C. § 1839(3)(A).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 28) *Electro-Craft, Inc. v. Controlled Motion, Inc.*, 332 N.W.2d 890, 901 (Minn. 1983); *Clark v. Bunker*, 453 F.2d 1006, 1009 (9th Cir. 1972); *Henry Hope X-Ray Products, Inc. v. Marron Carrel, Inc.*, 674 F.2d 1336, 1340 (9th Cir. 1982); *Anaconda Company v. Metric Tool & Die Company*, 485 F. Supp. 410, 421 (E.D. Pa. 1980)을 이규호, 앞의 논문, 20면

력이 아닌 합리적인 정도의 노력이면 충분하며,²⁹⁾ 예상 또는 감지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는 스파이 행위 등에 대해서도 방지하지 않아도 족하다.³⁰⁾ 대체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념해야 할 요소는 (i) 부정한 방법에 의해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과, (ii)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iii)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관리할 것, 및 (iv) 이러한 노력들이 영업비밀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된다.³¹⁾

다) 상황적 요소의 고려

한편 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으로 상황적 요소도 적용된다. 이에 대상 영업비밀의 본질, 관련 산업계의 성질 및 기업의 성질도 함께 고려한다.³²⁾ 비밀관리성의 준수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이러한 상황적 요소 하에서 어느 정도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의해 판단된다.³³⁾

에서 재인용.

- 29) *Surgidev Corporation v. Eye Technology, Inc.*, 828 F.2d 452, 455 (8th Cir. 1987) ("Only reasonable efforts, not all conceivable efforts, are required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putative trade secrets.").
- 30) *Aries Information Systems, Inc. v. Pacific Management System, Inc.*, 366 N.W.2d 366, 368 (Minn. App. 1985) ("The possessor of a trade secret is not required to guard against unanticipated, undetectable or unpreventable methods of discovery.").
- 31) David W. Slaby, *Trade Secret Protection: An Analysis of the Concept "Efforts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Secrecy"*, 5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J.* 321, 326. (1989). ("There are four legal guidelines which a trade secret owner must consider: (1) the efforts to maintain secrecy need not prevent improper means of discovery; (2) the efforts must be actual; (3) the trade secret must be treated as secret; and (4) the efforts must be directed at the trade secrets.").
- 32) *Ibid* 331. ("There are essentially three situational factors to consider in choosing the applicable efforts to maintain secrecy: (1) the nature of the trade secret; (2) the nature of the industry (including the prevalence of industrial espionage); and (3) the nature of the company.").
- 33) 이규호, 앞의 논문, 20면("구체적으로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해당 상황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노력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유럽

가) 영업비밀에 관련한 지침

EU는 2016년 6월 8일 “비공개 노하우 및 영업정보의 불법 획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지침”(이하 “EU지침”이라 한다)을 채택하였다.³⁴⁾ EU지침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란 “(a) 내부자들의 그룹에서 통상적으로 정보가 다루어지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의 요소에 대한 정확한 순서 및 구성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쉽게 접근되지 않는 비밀성이 있으며, (b) 비밀로서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c) 적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한 적절한 비밀유지의 조치를 통하여 정보에 대한 비밀성이 유지가 될 것”으로 제시된다.³⁵⁾ EU지침은 종래 비통일적이던 회원국 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권역 내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³⁶⁾

34)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35)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Art 2(1).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which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it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b) it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 (c) it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36) 한지영, “유럽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통일화를 위한 최신 동향”, 산업재산권 53호, 2017, 428면(“그동안 유럽연합 내각 회원국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정도가 상이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지 않았고, 유럽연합 내 기업들이 자국보다 영업비밀보호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영업비밀의 침해가 있거나 불법으로 공개된 경우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불충분한 법적 보호에 대한 보상 대책이 계속 요구되어 왔다는 점, 특히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s)를 부여하지 않는 영업비밀의 특성 상 그 보호수준이 특허, 저작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경쟁자 또는 공중에게 공개되면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존재하기 어렵고 산업스파이 등 제3자가 영업비밀을 탈취하거나 도둑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제대로

나) 유럽 주요국의 입법반영

유럽의 주요국들은 EU지침을 충실히 반영하여 자국의 영업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하였다. 영국은 영업비밀규정(The Trade Secrets Regulations) 제2조에 유럽영업비밀보호지침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합리적인 조치" 요건을 명시하였다.³⁷⁾ 프랑스는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법을 갖고 있지는 않다.³⁸⁾ 다만 2018년 상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요건에 영업비밀에 대한 합리적 보호대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³⁹⁾ 독일도 영업비밀을 정의하면서 다른 요건들과 함께 적절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⁴⁰⁾ 종래 독일은 영업비밀을 별도의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궁극적으로 불충분한 영업비밀 보호로 인하여 유럽 내수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이노베이션을 위한 자본 투자가 불충분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37) The Trade Secrets (Enforcement, etc.) Regulations 2018 2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which— (a)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b)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 and (c)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https://www.legislation.gov.uk/ukxi/2018/597/made> (2021년 10월 5일 최종방문).
- 38) 지식재산연구원,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6. 83면. (“프랑스는 별도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 39) LOI n° 2018-670 du 30 juillet 2018 relative à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1) (“Art. L. 151-1.-Est protégée au titre du secret des affaires toute information répondant aux critères suivants: 1° Elle n'est pas, en elle-même ou dans la configuration et l'assemblage exacts de ses éléments, généralement connue ou aisément accessible pour les personnes familières de ce type d'informations en raison de leur secteur d'activité; 2° Elle revêt une valeur commerciale, effective ou potentielle, du fait de son caractère secret; 3° Elle fait l'objet de la part de son détenteur légitime de mesures de protection raisonnables, compte tenu des circonstances, pour en conserver le caractère secret.”).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37262111/> (2021년 10월 5일 최종방문).
- 40) Act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GeschGehG) §2. (“Geschäftsgeheimnis eine Information a) die weder insgesamt noch in der genauen Anordnung und Zusammensetzung ihrer Bestandteile den Personen in den Kreisen, die üblicherweise mit dieser Art von Informationen umgehen, allgemein bekannt oder ohne Weiteres zugänglich ist und daher von wirtschaftlichem Wert ist und b) die Gegenstand von den Umständen nach angemessenen Geheimhaltungsmaßnahmen durch ihren rechtmäßigen Inhaber ist und c) bei d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Geheimhaltung

입법을 통해 정의하지 않았으나, EU지침을 따르게 됨으로서 보다 강화된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⁴¹⁾

다) 비밀관리성 판단의 기준

EU지침에 따른 비밀관리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으로는 ① 영업비밀의 가치, ② 영업비밀의 개발비용, ③ 정보의 성격, ④ 회사에 영업비밀이 미치는 중요성, ⑤ 회사의 규모, ⑥ 회사의 일반적인 기밀에 대한 처리조치, ⑧ 각 정보들에 대한 구분표시의 등급에 대한 성격 그리고 ⑨ 해당 정보에 대하여 종업원 또는 제휴기업과의 계약상 합의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제시된다.⁴²⁾ 다만 EU지침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EU회원국의 입법과 판례를 통한 해석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개념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은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관리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다.⁴³⁾

besteht.”). <http://www.gesetze-im-internet.de/geschgehg/BJNR046610019.html> (2021년 10월 5일 최종방문).

41) 정태호, 앞의 논문, 245면(“최근에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영업비밀지침25)을 채택 및 시행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소속 국가들이 이 지침을 따르게 되었는데, 독일도 역시 해당 지침에서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42) Michael Kieffer, “Die EU-Geheimnisschutzrichtlinie – Wie Sie auch in Zukunft Ihre Geschäftsgeheimnisse schützen”, Taylor Wessing (<https://deutschland.taylorwessing.com/de/die-eu-geheimnisschutzrichtlinie-wie-sie-auch-in-zukunft-ihre-geschäftsgeheimnisse-schutzen> 2021년 12월 15일 최종방문)를 이규호, 26면에서 재인용(“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영업비밀의 가치, 영업비밀의 개발비용, 정보의 성격, 회사에 영업비밀이 미치는 중요성, 회사의 규모, 회사의 일반적인 기밀에 대한 처리조치, 각 정보들에 대한 구분표시의 등급에 대한 성격 그리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종업원 또는 제휴기업과의 계약상 합의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존재한다.”).

43) 不正競争防止法 第二条 六. (“この法律において「営業秘密」とは、秘密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生産方法、販売方法その他の事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営業上の情報であって、公然

나) 비밀관리성 요건의 검토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입법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노력 등의 조건이 불지 않고 문언상 비밀로서 관리될 것만을 규정한다. 그러나 후술할 법원에서의 판단은 정보에 접근한 자가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인식가능하였을 정도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에 따른다.⁴⁴⁾ 따라서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관적인 인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비밀관리의사가 종업원 등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되고 비밀관리성이 제3자에 의해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⁴⁵⁾ 따라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이 비밀관리성에 합리적인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및 2019년 개정 이전 우리나라와 같은 ‘합리적인 노력’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⁴⁶⁾

다) 비밀관리성 판단의 기준

일본 법원은 구체적인 비밀관리조치에 대해 해당 정보의 성질, 보유형태, 정보를 보유한 기업 등의 규모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왔다.⁴⁷⁾ 구체적 기준은 경제산업성이 제시하는 영업비밀관리지

と知られていないものをいう.”).

- 44) 정차호, 앞의 논문, 285면(“법원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취지에 바탕하여 정보에 접근한 자가 그 비밀성을 인식 가능한 정도의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특허법학회, 앞의 책, 56면(“일본의 법원은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45) 한지영, 앞의 논문, 210면(“이때 비밀 관리성은 영업비밀보유기업의 비밀관리의사가 비밀관리 조치에 의해 종업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지고, 해당 비밀관리의사에 대한종업원 등의 인식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이규호, 앞의 논문, 29면.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사업자(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정보를 비밀이라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유자의 비밀관리의사(특정의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할 의사)가 보유자가 실시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응한 경제합리적인 비밀관리조치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되어 해당 비밀관리의사에 대한 종업원 등의 인식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 46) 정태호,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개정 동향의 비판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6호, 2019, 248면(“따라서 이와 같은 ‘합리성이 있는 비밀관리조치’라는 일본에서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에는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만 없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미국법과 우리나라의 2019년 개정 이전 법상의 ‘합리적인 노력’이 고려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침을 통해 살펴본다.⁴⁸⁾ 이에 따르면 필요한 비밀관리조치의 내용 및 정도는 기업의 규모, 업태, 종업원의 직무, 정보의 특성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직원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구두에 의한 확인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로 인정될 수도 있다.⁴⁹⁾ 관련하여 직원 전체의 수가 10명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비밀번호 등에 의한 접근제한, 비밀로의 표시 등이 없었음에도 기업의 특성상 일상적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⁵⁰⁾ 비밀관리조치는 영업비밀인 대상정보와 영업비밀이 아닌 일반정보를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하며, 그 대상 영업비밀인 정보에 대해 영업비밀임을 밝히는 조치로 구성된다.⁵¹⁾ 비밀관리조치의 대상자는 대상 정보에 합법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직원이며, 직무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당해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부서간의 정보배달 담당직원, 대형 사무실 내의 잠금장치가 없는 서고를 열람할 수 있는 타부서 직원 등)도 포함된다.⁵²⁾

47) 한국특허법학회, 앞의 책, 55면(“일본 판례는 영업비밀의 한 요소인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정보의 성질, 접근 가능자의 인적 범위, 침해대양 등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규호, 앞의 논문, 29면-30면(“어느 정도의 비밀관리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종전의 판례에서도 실제로 강구되어 있었던 구체적인 비밀관리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성질, 보유형태, 정보를 보유한 기업 등의 규모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 있는 비밀관리조치가 실시되어 있었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 왔다.”).

48) 經濟産業省, 營業秘密管理指針(全部改訂:平成27年1月28日).

49) *Id.* p7. (“秘密管理措置の具体的な内容・程度は、当該營業秘密に接する従業員の多寡、業態、従業員の職務、情報の性質、執務室の状況その他の事情によって当然に異なるものであり、例えば、營業秘密に合法的かつ現実的に接しうる従業員が少数である場合において、状況によっては当該従業員間で口頭により「秘密情報であること」の確認をしている等の措置で足りる場合もあり得る.”).

50) 大阪地判平成15年2月27日 平成13年(ワ)10308号.

51) *Id.* p5-6. (“秘密管理措置は、対象情報(營業秘密)の一般情報(營業秘密ではない情報)からの合理的区分と当該対象情報について營業秘密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措置とで構成される.”).

52) *Id.* p4-5. (“秘密管理措置の対象者は、当該情報に合法的に、かつ、現実的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従業員である。職務上、營業秘密たる情報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者が基本となるが、職務の範囲内か否かが明確ではなくとも当該情報に合法的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者(例えば、部署間で情報の配達を行う従業員、いわゆる大部屋勤務において無施錠の書庫を閲覧できる場

(4) 중국

가) 반부정당경쟁법상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은 제9조는 “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보호조치를 통하여 보호되고 있는 기술정보 또는 경영정보”로 규정한다.⁵³⁾

나) 비밀관리성 요건의 검토

비밀관리성 요건은 법문상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보호조치를 통하여 보호’에 해당한다.⁵⁴⁾ 해당 규정은 2017년 개정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 단지 ‘비밀보호조치’가 요구되었다.⁵⁵⁾ 최고인민법원의 <부정당경쟁민사사건에 관한 사법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에 따르면, 비밀보호조치란 “권리자가 정보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상업적 가치 등 구체적 상황과 상응하는 ‘합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권리자가 정보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상업적 가치 등 구체적 상황과 상응하는 ‘합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밀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⁵⁶⁾

다) 구체적 기준

사법해석은 인민법원이 관련 정보의 특성, 권리자의 비밀보호의사, 비밀보호조치의 식별정도, 타인이 정당한 수단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合における他部署の従業員など)も含まれる.”).

53) 反不正当竞争法 第九条. (“本法所称的“商业秘密”, 是指不为公众所知悉、具有商业价值并经权利人采取相应保密措施的技术信息、经营信息等商业信息.”).

54) 장광홍, “영업비밀보호법제에서의 주요 쟁점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모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152면. (“‘상응하는’ 비밀보호조치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중국에서도 비밀관리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55) 장광홍, 위의 논문, 152면. (“2017년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이전 ‘상응하는’이라는 한정이 없이 단지 ‘비밀보호조치’가 요구되었는데 2017년 개정으로 그 한정어를 추가하였다.”).

56) 장광홍, 위의 논문, 153면.

에 대한 어려움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⁵⁷⁾ 또한, ① 비밀정보의 공개범위를 제한하며 공개할 필요가 있는 관계자에게만 정보를 알리는 것, ② 비밀정보를 담은 보관함에 자물쇠를 채우는 수단 등 방호조치를 취하는 것, ③ 비밀정보의 보관함에 비밀표시를 명시하는 것, ④ 비밀정보에 암호화 등 보호방법을 취하는 것, ⑤ 비밀보호약정을 체결하는 것, ⑥ 비밀정보를 저장하는 기계, 공장, 작업장의 방문자를 제한하거나 비밀유지요구를 제시하는 것 및 ⑦ 비밀정보를 확보하는 기타 합리적 조 중 하나를 취하여 일반적으로 정보누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경우 권리자가 비밀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한다.⁵⁸⁾ 즉, 중국법상 비밀관리성 요건도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⁵⁹⁾ 다만 종업원과 체결한 비밀보호약정만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비밀보호약정을 주요 증거로 참고한다.⁶⁰⁾

57) 장광홍, 앞의 논문, 152면.

58)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一条 (“权利人为防止信息泄露所采取的与其商业价值等具体情况相适应的合理保护措施, 应当认定为反不正当竞争法第十条第三款规定的“保密措施”。人民法院应当根据所涉信息载体的特性、权利人保密的意愿、保密措施的可识别程度、他人通过正当方式获得的难易程度等因素, 认定权利人是否采取了保密措施。具有下列情形之一, 在正常情况下足以防止涉密信息泄露的, 应当认定权利人采取了保密措施: (一) 限定涉密信息的知悉范围, 只对必须知悉的相关人员告知其内容; (二) 对于涉密信息载体采取加锁等防范措施; (三) 在涉密信息的载体上标有保密标志; (四) 对于涉密信息采用密码或者代码等; (五) 签订保密协议; (六) 对于涉密的机器、厂房、车间等场所限制来访者或者提出保密要求; (七) 确保信息秘密的其他合理措施.”). 번역문은 장광홍, 앞의 논문, 153면 참조.

59) 장광홍, 앞의 논문, 154면(“중국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요건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유효성, 즉 상업비밀의 권리자가 의도적으로 상응하는 비밀보호조치를 취하며 일반적 상황 하에 비밀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 ② 합리성, 즉 같은 업종에서 적당한 비밀보호조치를 취하는 것, ③ 합법성, 즉 기업이 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호조치가 합법적이어야 하는 것, ④ 공개성, 즉 비밀보호조치가 상업비밀의 보호범위, 종류, 보호기간, 보호방법을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60) 장광홍, 앞의 논문, 155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기업)가 관련 정보가 비밀관리성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업원과 체결된 비밀보호약정만 제시하는 경우, 비밀관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비밀보호약정 유무를 주요 증거로 본다.”).

3. 소결

주요국들은 영업비밀보호 규정을 마련하며 비밀관리성을 공통적인 주요 요건으로 제시한다. 합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로 영업비밀로 관리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대상 영업비밀이 포함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III. 메타버스의 특징과 비밀관리성

1. 메타버스의 유형과 문제의 소재

메타버스에서도 비밀관리성 요건은 실제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비밀관리의 구체적 단서, 즉 영업비밀 보유자의 의지, 영업비밀의 성격, 관리가 일어나는 공간의 특징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현실공간과는 다른 속성을 지니는 곳으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의 적용과 실제 사례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메타버스가 많이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어떠한 공간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메타버스에 대한 통일된 정의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⁶¹⁾

논의를 위해 이 글에서는 2006년 미국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이 제시한 <메타버스 로드맵>(이하 “로드맵”이라 한다)에 따라 메타버스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⁶²⁾ 로드맵은 메타버스의 개념을 현실세계의 대한 반대적 개념으로서의 가상공간(virtual space)이 아닌,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교차점, 결합점 및 수렴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이며, 물리적으로 영구화된 가상공간의 융합이며, 이용자들은 물리적 현실과 가상공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⁶³⁾ 로드맵은 현실증

61) 앞의 각주2 참조.

62) ASF의 로드맵의 원문은 웹페이지(<https://www.metaverseroadmap.org/MetaverseRoadmapOverview.pdf> 2021년 12월 15일 최종방문) 참조.

강(augmentation)과 현실모방(simulation) 및 외적 투영기술(external technology)과 내적 몰입기술(intimate technology)의 방향성에 따라 메타버스의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면서, 크게 가상세계(virtual worlds), 거울세계(mirror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및 라이프로그(lifeloggng),의 4가지 메타버스 유형을 제시하였다.⁶⁴⁾ 따라서 비밀관리성 문제도 각 메타버스의 속성과 특징에 따라 요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종래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터넷 등의 개방된 공간에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다양한 일반 사용자가 접속하여 개방성이 확대되는 메타버스의 비밀관리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대상으로서 메타버스의 특징에 기인한 관리자의 문제도 함께 살펴본다.

2. 메타버스 서비스 유형에 따른 비밀관리성 문제

가. 가상세계형 메타버스의 비밀관리성 문제

가상세계형 메타버스의 핵심 구성요소는 아바타를 통한 사용자의 의인화이다.⁶⁵⁾ 사용자는 가상세계에서 현실공간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⁶⁶⁾ 분류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같은 유희형 가상세계와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사회적 가상세계로 구분된다.⁶⁷⁾ 환상성과 게임성이 강조되는 유희형 가상세계에서는 영

63) *Id.* at 4. (“The Metaverse is the convergence of 1) virtually enhanced physical reality and 2) physically persistent virtual space. It is a fusion of both, while allowing users to experience it as either.”).

64) *Id.* at 5.

65) *Id.* at 6. (“A key component of the VW scenario is one’s avatar (or in multiplayer games, character), the user’s personification in the VW.”).

66) *Id.* at 6. (“But in comparison to one’s physical persona, growth in the social, economic, and functional capabilities of one’s avatar can be far more rapid, and learning experiences can be greatly accelerated.”).

67) 한혜원,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의 유형 및 발전방향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2008, 322면(“유희적 가상세계는 ‘가상(virtual)’에 더욱 가까운 반면, 사회적 가상세계(SVW)는 ‘실제(actual)’에 더욱 가깝다. 다시 말해 ‘가상(virtual)’의 양면성 중에서 유희적 가상세계의 경우 ‘실제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을 강조한 반면, 사회적 가상세계는 ‘실제로

업비밀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가 창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비밀관리성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적다.⁶⁸⁾ 그러나 사회적 가상세계에서는 현실세계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영업비밀의 성격을 갖는 정보가 많이 생성됨은 물론, 별도로 비밀로 관리될 수도 있다. 가상세계에서 생성된 영업비밀에 관해 다룬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된 사례들은 현실세계의 저작권자, 상표권자 등의 허락 없이 저작물이나 상표를 가상세계에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러 기업들이 비즈니스 공간으로 가상세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플랫폼들의 기술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만간 메타버스상에서의 기술탈취 등 비밀관리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메타버스 자체를 탐험하고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생산행위를 영위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세계라 할지라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한 비밀관리성 문제는 메타버스상에서 비밀관리성의 합리적 관리 기준을 어느 정도로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가령, 오프라인 사무실과 업무기능상 차이가 없는 메타버스상의 사무실에 대해서 평소 오프라인 사무실과 같은 수준의 비밀취급 규정이 존재하는지, 비밀을 공중 또는 관련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구분하고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나. 거울세계형 메타버스의 비밀관리성 문제

거울세계형은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모형이나 물리적 세계를 반영한 것을 말한다.⁶⁹⁾ 구글어스나 3차원 지도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메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한 결과물로, 같은 가상세계이지만 두 세계의 목표와 역할이 상이하다.”).

68) 게임형 메타버스에서는 서비스상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창작물에 대한 소유를 플랫폼이 가져가고, 이용자들의 고유한 창작을 금지하는 한편 virtual property에 대한 유통을 막고 있다. Crowne, Emir Aly, and Maxim Kaploun. "From Blackacre & Whiteacre to Greyacre: Three Models for Ascribing Virtual Property Rights in Cyberspace." U. Balt. Intell. Prop. LJ 19 5 (2010). ("Game developers such as Electronic Arts (EA), Blizzard, and NC Soft have held that all in-game creations belong exclusively to the creating company and do not allow users to create original content; nor do they allow the selling or reselling of any virtual property.”).

69) ASF *supra* note 62 at 9 (“Mirror worlds are informationally-enhanced virtual models or

버스는 현실세계의 정보를 집적하여 메타버스에 정교히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비밀관리성에 있어서는 현실에서 관리되던 수준만큼의 비밀관리성이 잘 구현되었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과거 스트리트뷰를 구축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었던 것처럼,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영업비밀이 메타버스로 편입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⁷⁰⁾ 예를 들어 종래 존재하던 영업환경을 그대로 가상화하여 메타버스로 구성하는 경우,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에서는 영업비밀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물리적 정보가 메타버스상의 오브젝트로 구현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비밀관리가 인식될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다. 증강현실형 메타버스의 비밀관리성 문제

증강현실은 현실 환경 기반 위에 네트워크화된 정보나 이미지를 덧붙여 그것이 실재하는 것처럼 현실을 증강시킨 세계이다.⁷¹⁾ 증강현실을 통해 현실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로의 접근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물리적 거리와 시간차를 극복하고 메타버스 상에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페이셜’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증강현실은 현실에서 접속가능한 정보의 양을 증대시키고, 접속의 방법을 간소화한다. 이에 비밀관리성 문제는 종래 현실세계에서 비밀로 관리하던 정보를 증강현실에서 구현하여 다루거나, 반대로 증강현실에서 비밀로 관리한 정보를 현실세계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증강현실을 통해 참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구현된 업무자료를 통해 협업하고 자료를 공유한다면 종래 오프라인 상에서의 물리적 업무자료를 비밀로서 취급하는 것과는 다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reflections” of the physical world.”).

70) 물론 사생활 침해와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보호의 의의, 요건, 효과 등은 상이하지만 현실 세계의 물리적 정보를 처리하여 새로운 가상공간에 구현된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71) *Id.* at 12. (“Metaverse technologies enhance the external physical world for the individual, through the use of location-aware systems and interfaces that process and layer networked information on top of our everyday perception of the world.”).

라. 라이프로그형 메타버스의 비밀관리성 문제

라이프로그형 메타버스는 일종의 ‘보조적 기억장치’(backup memory)로서,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 저장 및 공유하고, 서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술과 자기표현을 위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⁷²⁾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이다. 이 유형의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주도하는 정보의 작성과 공유를 기본구조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 등은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지만,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도 한다.⁷³⁾ 따라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구분하고, 공유 등을 통한 정보로의 접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주요 고객목록은 영업비밀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된다.⁷⁴⁾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생성된 고객목록은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고객목록과는 성격이 상이하다. 기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경우, 소셜미디어 목록 상의 친구목록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기업의 소셜미디어 연락처 목록(contacts)의 영업비밀성에 관한 판례를 살펴본다. Cellular Accessories for Less v. Trinitas에서는 휴대폰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던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가 해고된 후에 경쟁회사를 창업한 해당 사례에서, 고객목록을 고용주의 자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용계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의 LinkedIn 계정상의 연락목록은 고용주에 귀속된다고 판결하였다.⁷⁵⁾

72) *Id.* at 14. (“Lifeloggging is the capture, storage and distribution of everyday experiences and information for objects and people. This practice can serve as a way of providing useful historical or current status information, sharing unusual moments with others, for art and selfexpression, and increasingly, as a kind of “backup memory.”).

73) Jones, N., Borgman, R., & Ulusoy, E. (2015). Impact of social media on small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74)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Evans, M. Trade Secret Status for Business Customer Lists Under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Tul. J. Tech. & Intell. Prop.*, 21, 21. 33. (2019) (“In conclusion, business customer lists can be protected as trade secrets, but not all customer lists qualify for this status.”).

75) *Cellular Accessories for Less, Inc. v. Trinitas LLC*, 2014 WL 4627090 (N.D. Cal. Sept. 16,

반면 *Eagle v. Morgan*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생성한 LinkedIn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였으나 퇴사 후 회사가 임의로 해당 LinkedIn계정의 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법원은 회사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직원의 LinkedIn계정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⁷⁶⁾ 또한 *BH Media Group v. Bitter* 사건에서는 신문사에 고용되었던 작가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소유권 다툼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된 직원 핸드북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소유권 입증 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⁷⁷⁾ 이상의 판례들을 살펴볼 때, 소셜미디어 등의 라이프로그킹 서비스에서도 비밀관리성에 대한 특별한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를 영업비밀로 인식하였는지, 또는 고용계약 등을 통해 영업비밀로 관리하고자 하였는지를 여부로 비밀관리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메타버스의 개방정도에 따른 비밀관리성 문제

개방형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의 접근성을 높여 거의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하는 형태이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를 감안할 때, 개방형 메타버스에서 생성된 정보는 상당한 수준의 비밀관리가 수반되어야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폐쇄형 메타버스는 사용자의 참여를 기업의 종사자 등 특정한 그룹으로 제한한다. 또한, 메타버스 생성의 목적에 맞게 메타버스의 확장성을 제한한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제한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이용 양태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개방형 메타버스에 비해 비밀관리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프라인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관리성 유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에도 주로 활용되는 기업의 인트라넷에서도 퇴사한 직원이 퇴사 후에 인트라넷에 접속한 사례 및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면, 향

2014).

76) *Eagle v. Morgan*, 2013 WL 943350 (ED Pa. Mar. 12, 2013).

77) *H Media Group Inc. v. Bitter*, 2018 WL 3768425 (W.D. Va. Sept. 27, 2018).

후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폐쇄형 메타버스라 할지라도 실제 비밀관리성이 문제가 되는 메타버스의 특징, 대상 영업비밀의 속성 및 영업비밀 보유자의 행동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메타버스 플랫폼 관리자의 문제

메타버스 플랫폼도 서비스의 일종이다. 메타버스에서 구현 가능한 업무가 늘어날수록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권한도 커진다. 메타버스의 개발자 및 관리자는 메타버스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⁸⁾ 현실세계에서의 영업비밀 관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책임에 의하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조치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관리자는 메타버스 내에 생성·보관된 영업비밀에 접근하기 쉬우며,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취급을 통제할 수도 있다.

메타버스 관리자의 권한이 나타난 사건으로 Bragg v. Linden Research, Inc.을 살펴본다.⁷⁹⁾ 해당 사건은 세컨드 라이프에서 일어난 것으로,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사용자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과 거의 동일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 이용자 중 한 명인 Marc Bragg는 세컨드 라이프 속에서 Marc Wobegon으로 활동하며 메타버스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는데, 운영주체인 Linden Lab은 해당 계정의 운영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정이용을 정지 및 폐쇄하였다. 이에 2006년 5월 Marc Bragg는 계정폐쇄에 따라 자신이 세컨드 라이프에서 보유하던 수천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세컨드 라이프 제작자인 Philip Rosedale에게 제기하였다. 이에 Linden Lab은 이용자 계약을 근거로 방어하였지만,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2007년 10월 양측의 비밀합의로 분쟁이 종료되었다. 이는 영업비밀과 직접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관리자의 권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78) Crowne, Emir Aly, and Maxim Kaploun. supra note 68 at 5 (“An additional objection to recognizing property rights in the virtual world might arise in the manner in which the developer can change or manipulate a user's virtual property.”).

79) Bragg v. Linden Research, Inc., 487 F. Supp. 2d 593 (E.D. Pa. 2007).

한편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된 정보의 표현체(표현물)에 대한 권리가 플랫폼에게 부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의 이용자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만든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되, 로블록스가 해당 지식재산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규정한다.⁸⁰⁾ ZEPETO 약관은 ZEPETO 직원이 사용자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회사에 부여하는 것을 규정한다.⁸¹⁾ 로블록스와 ZEPETO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고, 게임이나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얻는 사용자들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플랫폼들이 약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 또는 관리자가 메타버스상의 사용자가 생성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받는다라는 점은 비밀관리성 요건의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80) Roblox Terms of Use 6.B.(3). (“Ownership of UGC and License Grant to Roblox. For any UGC that you have ever Provided or that you will Provide (whether created solely by you or together with others) (a) between you and us or you and users, you retain all copyrights that you may hold in the UGC, and (b) in consideration of using the Service and the potential to earn Robux as discussed in the Robux section, you grant us a perpetual, irrevocable, worldwide, non-exclusive, royalty-free right and license ...”). <https://en.help.roblox.com/hc/en-us/articles/115004647846-Roblox-Terms-of-Use> (2021년 10월 4일 최종방문).

81) ZEPETO 이용약관 3.3) (“회사의 직원은 ZEPETO에 업로드 된 "사용자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3.4) (““사용자 콘텐츠”를 ZEPETO에 게시함으로써 사용자는 현재 또는 추후 개발되는 모든 미디어 및 배포 매체에 해당 사용자 콘텐츠를 사용(기계 학습 및 네이버 제트 주식회사 단독 또는 계열사와 합작 R&D 목적으로 얼굴 이미지, 사진,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 권한을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https://support.zepeto.me/hc/ko/articles/360047786633-%EC%9D%B4%EC%9A%A9%EC%95BD%EA%B4%80> (2021년 10월 4일 최종방문).

IV. 맺음말: 메타버스내 영업비밀 개념의 재검토

법과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변모한다. 다만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등장하였다고 해서 근본적인 법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와 비밀관리성 요건도 새로운 기술(전신,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이 등장할 때마다 보호요건 자체를 계속해서 변경해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수준의 메타버스가 구축되지 않는한, 비밀관리성 요건의 적용도 이미 존재하는 법리를 개별 메타버스의 특징과 대상 영업비밀의 구체적 관리를 살펴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의 업무비중보다 메타버스에서의 비즈니스가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면 메타버스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새로운 법리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자체에서 유래되는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될수록 새로운 영업비밀보호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국은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에 최소한의 사전적 대비로서, 메타버스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영업비밀지침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종래 여러 차례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지침이 제시되었지만,⁸²⁾ 아직은 오프라인 또는 기존에 활용되던 수준의 온라인 환경의 관점이 중심이었던 한계가 있다. 이에 여전히 생소한 메타버스이지만, 영업비밀의 관리를 둘러싸고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분명한 기준을 세워나간다면, 메타버스 도입에 따른 규범적 전환의 작은 실마리를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82) 특허청 외, 영업비밀 관리매뉴얼, 특허청, 2012; 특허청,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마련 연구, 특허청, 2020; 특허청 외, 영업비밀등급분류 가이드, 특허청, 2021 등.

(논문투고일: 2021.11.29., 심사개시일: 2021.12.13., 게재확정일: 2021.12.13.)



▶ 이흥기

메타버스, 가상세계,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영업비밀보호법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 김창화 외,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영업비밀 보호요건 판단의 변화 - 기여 책임 원칙에 의한 ‘상당성’의 판단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4권 제2호, 2014.
- 노현숙,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영업비밀성에 관한 연구 -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2016.
- 닐 스티븐슨(남명석 역), 스노크래시, 문학세계사, 2021.
- 손승우,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 이규호, “영업비밀의 대상과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22집 제1호, 2020.
- 장광홍, 영업비밀보호법제에서의 주요 쟁점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모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 정차호, “영업비밀 관리성 요건: 객관적 인식을 위한 상당한 노력”, 성균관법학 제26권 제1호, 2016.
- 정태호,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개정 동향의 비판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6호, 2019.
- 지식재산연구원,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2016.
-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 진원사, 2019.
- 특허청 외, 영업비밀 관리매뉴얼, 특허청, 2012.
- 특허청 외, 영업비밀등급분류 가이드, 특허청, 2021.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가이드북, 2004.
- 특허청,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마련 연구, 특허청, 2020.
- 한지영, “유럽에서 영업비밀보호의 통일화를 위한 최신동향”, 산업재산권 53호, 2017.
- 한혜원,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의 유형 및 발전방향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2008.

II. 해외문헌

- Bone, R. G. A new look at trade secret law: doctrine in search of justification. *Calif. L. Rev.*, 86, 241. 252 (1998).
- David W. Slaby, Trade Secret Protection: An Analysis of the Concept “Efforts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Secrecy”, 5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J.* 321, 326. (1989).
- Eccles, Robert G., Jr., and Jonathan Reichenal. "The Metaverse as a Business Platform." *Harvard Interactive Media Review* 1, no. 1 (spring 2007).
- Emir Aly Crowne & Maxim Kaploun, From Blackacre & Whiteacre to Greyacre: Three Models for Ascribing Virtual Property Rights in Cyberspace, 19 *U. Balt. Intell. Prop. L.J.* 1, 9 (2010).
- Jones, N., Borgman, R., & Ulusoy, E. Impact of social media on small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015).
- Sharon K. Sandeen and Christopher B. Seaman, Toward a Federal Jurisprudence of Trade Secret Law 32 *Berkeley Tech. L.J.* 829 833 (2017).
- Watson, A. Trade Secrets and Roman Law: The Myth Exploded. *Tul. Eur. & Civ. LF*, 11, 19. (1996).

III. 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판결.
- Surgidev Corporation v. Eye Technology, Inc.*, 828 F.2d 452.
- Aries Information Systems, Inc. v. Pacific Management System, Inc.*, 366 N.W.2d 366.

Cellular Accessories for Less, Inc. v. Trinitas LLC, 2014 WL 4627090 (N.D. Cal. Sept. 16, 2014).

H Media Group Inc. v. Bitter, 2018 WL 3768425 (W.D. Va. Sept. 27, 2018).

Bragg v. Linden Research, Inc., 487 F. Supp. 2d 593 (E.D. Pa. 2007).

IV. 인터넷 자료

특허청 우리말샘 국어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25484&viewType=confirm

로엔비 온라인주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비밀관리성] http://academynext.lawnb.com/Info/ContentView?sid=J001000308_114509_0

ASF, Metaverse Roadmap: Pathways to the 3D Web, 2007. <https://www.metaverseroadmap.org/MetaverseRoadmapOverview.pdf>

Abstract

Legal Issues of Trade Secrets in Metaverse

Lee, Hong Kee*

Recent metaverse technology will be able to engage in productive activities similar or equal to reality. If the metaverse is used as a business workspac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ithin the metaverse arises.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apply the trade secret requirements to the metaverse, which has a different nature than the real world. Unless the metaverse substitutes the real-world business space, it is understood that existing trade secret principles are still sufficient to apply. However, as long as the metaverse technology keeps developing, new trade secret issues will arise continuously. This article suggests providing the guideline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in metaverse for practical issues in the near future.



Lee, Hong Kee

metaverse, virtual reality, trade secret,
management of secrecy, trade secret act

* Member, Korea Association of Science and the Law